성주군농기계수리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 안 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03. 3. .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개정이유

○ 농기계 수리장 및 순회수리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농업인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와 적기영농의 농기계 사용 불편 해소 및 편익을 도모하기 위함.

○ 따라서 개당 부품가격이 3,000원 이하의 부품은 무상지원하여 농가의 부담경감과 어려운 농촌여건을 감안 농업인을 지원코자함.

2. 주요골자

○ 제5조(부속품대 및 수수료)

① "내방 기계의 정비수리 및 순회정비시 소요되는 **부속품의 대금은 개당 부품가격이 3,000원 이하의 부품은 무상으로 하고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**"로 개정

3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4. 참고자료

○ 성주군농기계수리장설치및운영조례

성주군조례 제 호

성주군농기계수리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성주군농기계수리장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제1항중 "부속품의 대금과 그 부속품 대금의 10%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가산 징수할 수 있다" 를 **"부속품의 대금은 개당 부품가격이 3,000원 이하의 부품은 무상으로 하고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"**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
제5조(부속품대 및 수수료)①내방기계의 정비수리 및 순회정비시 소요되는 **부속품의 대금과 그 부속품 대금의 10%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가산 징수할 수 있다.**	제5조(부속품대 및 수수료)----------**부속품의 대금은 개당 부품가격이 3,000원 이하의 부품은 무상으로 하고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.**